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48

발의연월일: 2020. 6. 26.

발 의 자:김도읍·추경호·박덕흠

이 용・이종배・안병길

조수진 • 박수영 • 김승수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 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은 71개로 저조한 편이며, 국내로 복귀한 이후 폐업한 기업도 있어 실질적인 국내복귀 유인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보임. 또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어 국가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마련 및 국내복귀기업의 행정편의를 증대하고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 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라. 정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근로자에게 국민 주택 등의 우선입주 및 정착을 위한 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 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5년마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원활한 인력지원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③ 지원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 전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 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연구개발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 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2(국내복귀기업 근로자 지원) ①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근로자에게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일정 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중여·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할 수 없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 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중 "제13조의5까지 및 제14조부터"를 "제13조의5까지, 제14조부터"로, "규정에 따른"을 "규정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 수립·시행) ①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 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매 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6. 원활한 인력지원 및 수급에 <신 설> 관한 사항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지원계획은 「국가균형발전 <신 설> 특별법 시4조에 따른 국가균 형발전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 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략)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1. ~ 5. (생략) <신 설>

6. (생략) ③ • ④ (생 략) <신 설>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 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① (현행과 같음)

- 1. ~ 5. (현행과 같음)
- 6.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7. (현행 제6호와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연구개발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u><신</u> 설>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국내복귀기업 근로자 지원) ① 정부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근로자에게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 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 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 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 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 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 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 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절치) ① ~ ③ (생 략)
④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제 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 2부터 제13조의5까지 및 제14 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기관에 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원대상 국내복귀기업 근로자	.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	<u>한</u>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원할 수 있다.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
4	
<u>제13</u> 조의5까지, 제14	조
<u>부터</u> 규정 및	ユ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